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3

2017-3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등 4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5건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서울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례 근거 규정 마련여부 등 2건

■ 대법원 판례

- 목적외 자금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5)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7)
-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9)
-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1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16)
- ▶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
-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2)
- ▶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4)
- ▶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6)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광주광역시의의회 인사청문특위 구성 (29)
- ▶ 경기도의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30)
- ▶ 전북도의회 군산항 활성화 위해 자동차 환적화물 지원 촉구 (31)
- ▶ 경남도의회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화 (34)



최근 제·개정 법령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
-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9)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40)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1)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서울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례 근거 규정 마련여부 (44)
- ▶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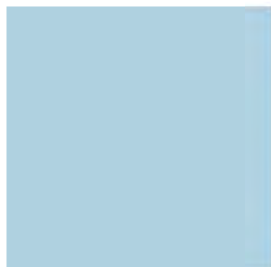
대법원 판례

- ▶ 목적외 자금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51)
- ▶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5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훈령 제1005호, 2017.3.23., 제정]

□ 주요목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함

□ 주요 내용

제4조(공개대상)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기간, 감사종류,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
2.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제5조(공개시기)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계획은 7일 이내, 감사결과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개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6조(공개절차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감

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문을 작성한다. 다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의 공개문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유지·관리한다.

제7조(공개문 표시 방법) ① 공개하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방법으로 수정·삭제하여 표시한다.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3.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자가 소속한 부서 및 관계자의 직급·직위. 다만 주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관한 부분 삭제
4. 주소 및 소재지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또는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법인·단체명 등은 실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의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비공개 표시 방법)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문에 해당 감사결과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22호, 2017.3.23., 제정]

□ 주요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아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를 판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학습부진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습부진아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3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23.] [부산광역시조례 제5552호, 2017.3.22., 제정]

□ 주요목적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확산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다양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시행 2017.4.23.] [부산광역시조례 제5551호, 2017.3.22., 제정]

□ 주요목적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빈곤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 ·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 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에너지 복지 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
 3.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 · 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

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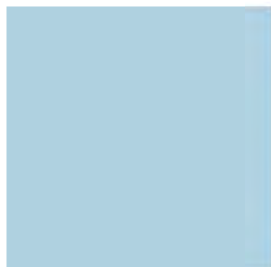
1.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4.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3.17.]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218호, 2017.3.17., 제정]

□ 주요목적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2.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329호, 2017.3.20., 제정]

□ 주요목적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부여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여군 가족행복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부여군 가족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복지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
2. 군정과의 업무 연계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3. 재단 운영 및 서비스 실천에 관한 주민 참여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2.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지원 사업
3.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4. 복지재단 자체프로그램 개발 추진 보급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3.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3.17.]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275호, 2017.3.17., 제정]

□ 주요목적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생태 해설, 홍보, 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생태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생태자원에 대한 탐방안내 및 해설

2. 문화 · 관광 · 생태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3. 관광객 대상 자연생태 홍보 · 교육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진행

4. 그 밖에 군수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와 종류, 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

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 및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관내 문화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의 양성 · 배치 ·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7.3.23.]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296호, 2017.3.23., 제정]

□ 주요목적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3.2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19호, 2017.3.23., 제정]

□ 주요목적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적립금의 재원) 시장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제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1회계 연도에 적립 총액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제5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의 운용심의회) ①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적립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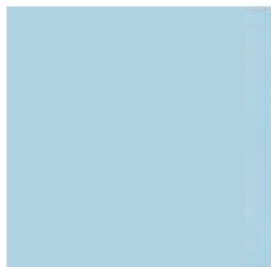
1. 적립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
2. 적립금출납원: 예산담당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광주광역시의회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인사청문특위 구성

- 광주광역시의회는 14일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5개 특위별로 총 7명씩 구성을 했다.
- 인사청문 특위에서는 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 자질 검증할 계획이다.
- 활동기간은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에 대해 청문을 마친 후 임명될 때까지며, 인사검증에 대한 공정성 확보,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 청취, 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경과보고서 채택 등 업무협약을 준수하면서 엄정하게 실시한다.
- 청문절차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사특위에서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책임자가 인사청문 대상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오늘, 제 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공 의원은 고카페인 과다 복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섭취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등의 실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도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가정에서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업체 등에서 제때 수거하지 않아 적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관리 실정을 지적 하면서,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의 교육 강화, 폐의약품 회수사업 관리의 철저, 회수·처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북도의회

군산항 활성화 위해 자동차 환적화물 지원 촉구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의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항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 환적화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항 활성화는 전북수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라면서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지원에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지난 2013년 물동량 측면에서 목포항에 추월을 허락하고 서해안권 꼴지 항만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최인정 의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여파로 수출선박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도 수출을 전담하는 군산항 물동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 기준 군산항 자동차 물량은 총 35만9천여 대로, 그중 31만 1천여 대는 환적 자동차 물량이다. 다시 말해 군산항에서 가장 많은 수출물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약 87%는 환적 자동차 물량이라는 것.

그는 “목포항의 경우 차량 및 부품 취급 물동량이 2006년 183만여 톤에서 2015년 1032만여 톤으로 5.6배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364만여 톤에서 428만여 톤으로 17.6% 늘어나는데 그쳤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환적 화물이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중간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선박입출항에 따른 간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해당 업계는 환적 화물을 유치하는 항만은 세계항만을 선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적화물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항만간에 특히, 환적 자동차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목포항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전용 부두를 새롭게 개장하면서 자동차 환적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섰다”면서 “최근에는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조례를, 자동차 환적 화물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항 수출 자동차 물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는 기아자동차다. 최근 기아차는 광주공장 생산 물량을 목포항으로 선적하고 화성과 소하리 공장 생산 물량은 평택항으로 선적해 그간 군산항으로 보내던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가 향후에는 군산항에서 완전 철수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기아차 물량 감소에 따라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덩달아 환적 자동차 물량을 다른 지역 항구로 이탈하면 하역사, 도선, 예선, 선박대리점 등 약 1만 명이 종사하는 군산항만업계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큰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도가 자동차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항비 감면 등의 지원과 자동차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박지 항로 입구의 준설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전북도 목포항의 사례와 같이 컨테이너 화물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환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은 “군산항이 서해안 끝자 항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전북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 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화로 한국판 '말뫼의 영광' 재현

과거 경남과 국가 경제를 선도해왔던 조선업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통영지역도 중소 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1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해오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조선소들이 텅 비워짐에 따라, 인근 상가들의 셔터도 굳게 내려졌고, 인적이 드물어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1900년대 중반,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호황기를 이끌다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해 이제는 녹이 슬어버린 디트로이트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볼 수 있는 2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폐조선소 부지와 수십 개의 크레인들은 조선업의 몰락을 상징이나 하듯,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 도남동 내에 남겨진 광활한 3개 폐조선소 부지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치 방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1980년대 말 스웨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말뫼시는 지역경제의 중심이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쇠락의 위기를 마주했고, 대형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처분한 일로 국내에서 ‘말피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피시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덴마크까지 연결되는 8킬로미터 가량의 다리를 건설해 바닷길을 이어, 이를 관광상품화 하였고, 정보통신, 바이오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의 신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말피시가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도시로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도 스웨덴 말피의 부활 신화를 교훈 삼아 통영을 남해안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방안」의 기본구상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기본구상에 우리 지역 폐조선소 관광자원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고,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면밀하게 협조해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참 고

말뫼의 눈물 (Tears of Malmoe)

현대중공업 육상건조시설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골리앗 크레인의 별칭으로 '코쿰스 크레인(Kockums Crane)'이라고도 한다. 높이 128m, 폭 164m, 인양능력 1천 500t급(현대로 이전 후 개조공사를 거쳐 인양능력1천600t으로 향상) 자체중량 7560t으로 당시로는 세계최대의 크레인이었다.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 조선업체 코쿰스(Kockums)가 문을 닫으며 내놓았고 그걸 2002년 현대중공업이 막대한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사들였다. 현대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하는데 총 220억원을 투입했다.

2002년 9월 25일 말뫼 주민들은 크레인의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아쉬워했고 스웨덴 국영방송은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뫼의 눈물'이라고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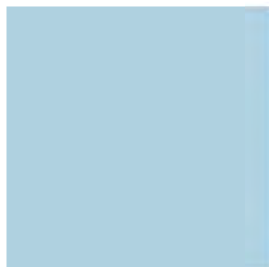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의 울산 육상건조시설에 설치됐으며 2003년 하반기 부터 실가동에 들어가 현대중공업이 세계최초로 육상건조 공법을 성공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스웨덴 말뫼시	말뫼의 눈물(코쿰사로부터 들어온 크레인)
	
외순드 다리(스웨덴 말뫼~덴마크 코펜하겐)	생태관광도시로 변모한 말뫼시
	



최근 제 · 개정 법령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0호, 2017.3.14., 제정]

□ 개정이유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창조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4조).

나.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0조).

사.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2.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56호, 2017.3.27.,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검사, 검찰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채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채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채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채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채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채납한 외국인의 채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채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채납한 외국인 중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채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채납하고 채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채납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746호, 2017.3.21., 제정]

□ 제정이유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이른바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상위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어 실질적인 해양환경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인 물리적 공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오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오염효과의 장기간 축적과 사후발현, 매체를 통한 전체적인 순환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간적 관점의 결여,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왔음.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보전·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발·이용 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모범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과 활용의 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5조).

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등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 시에 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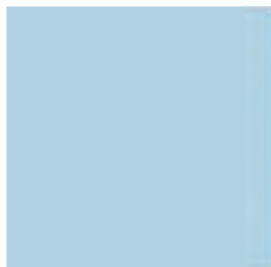
바.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 질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규정함(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 국제협력의 촉진, 해양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민간단체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안전번호)의견17-0035(회신일자)2017-03-06

【질의요지】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의견】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이들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하 “강남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남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를 “법인”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즉,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이하 “강남구 등록법인”이라 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강남구 등록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이들 법인에 대하여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남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6. 3. 회신 의견 16-0114 및 법제처 2016. 3. 31. 회신 의견 16-0078 참조).

따라서, 강남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강남구 등록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경상남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전번호)의견17-0047(회신일자)2017-03-14

【질의요지】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은 조례안 제8조와 같이 경상남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유】

「수도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등”이라 함)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남도 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과 제8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적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경상남도 조례안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상남도의 행정적인 노력은 「수도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등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하여 도지사의 관여가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속한 대응 및 대상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2005. 3. 31. 법률 제7462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고), 숙박업자등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행을 명하는 사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경상남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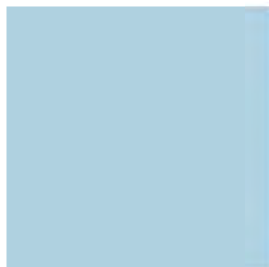
따라서,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행정적인 노력이 「수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숙박업자등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행을 명하는 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범위에서,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상남도 조례안 제8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대등한 관계인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안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법제처 2016. 3. 8. 의견제시 16-0038 참고), 경상남도 조례안 제8조와 같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시사항】

-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원칙적 소극)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 [2] 갑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2] 갑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전적비 및 시공사인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갑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시사항】

-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 등의 전제로서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 의료행위 주체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이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국가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한센인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3]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갑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판결요지】

- [1]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

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2]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원 등이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의 상대방인 한센인들로부터 ‘사전에 이루어진 설명에 기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한센인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설령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3]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갑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의사 등이 한센인인 갑 등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술이 행해진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한센병의 유전위험성과 전염위험성, 치료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갑 등이 수술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 할지라도, 갑 등은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보일 뿐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는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로 갑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 [4]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

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7년 3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